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

(법 · 시행령 · 시행규칙)

2004. 05. 30.

환 경 부

목 차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	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	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
제1조(목적) 1	제1조(목적) 1	제1조(목적) 1
제2조(정의) 1		제2조(실내공간오염물질) 1
제3조(적용대상) 2	제2조(적용대상) 2	
제4조(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) 5		제3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) 5
제5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) 5		제4조(실내공기질 권고기준) 6
제6조(실내공기질 권고기준) 6		제5조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) 7
제7조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등) 7	제3조(업무의 위탁) 7	제6조(환기설비의 설치기준) 8
제8조(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) 8		제7조(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) 8
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 8		제8조(개선명령기간 등) 10
제10조(개선명령) 10		제9조(개선계획서의 제출 등) 11
제11조(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) 12		제10조(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) 12
제12조(실내공기질의 측정) 13		제11조(실내공기질의 측정) 13
제13조(보고 및 검사 등) 14		제12조(보고) 14
제14조(벌칙) 15		제13조(오염도검사기관) 14
제15조(양벌규정) 15		
제16조(과태료) 16	제4조(과태료의 부과) 16	제14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16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	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	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19</p> <p>②(기존지하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19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19</p> <p>제2조(기존시설의 중앙공조설비에 관한 경과조치) 19</p> <p>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19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(시행일) 19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전문개정 2003.5.29 법률 제6911호】</p> <p>①(시행일) 20</p> <p>②(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20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1998.12.31 대통령령 제16,056호】</p> <p>(시행일) 1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전문개정 2004.5.25 대통령령 제18,402호】</p> <p>제1조(시행일) 20</p> <p>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20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1998.12.31 환경부령 제54호】</p> <p>(시행일) 1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전문개정 2004.5.28 환경부령 제156호】</p> <p>제1조(시행일) 20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20</p> <p>제3조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에 대한 적용례) 20</p> <p>제4조(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적용례) 21</p> <p>제5조(보고에 대한 특례) 21</p> <p>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21</p>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</p> <p>제정 1996.13.30 법률 제5224호 전문개정 2003. 5.29 법률 제6911호</p> 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다중이용시설”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 2. “공동주택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. 3. “오염물질”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 	<p>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</p> <p>제정 1997.12.31 대통령령 제15,584호 개정 1998.12.31 대통령령 제16,056호 전문개정 2004. 5.25 대통령령 제18,402호</p> <p>제1조(목적)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</p> <p>제정 1998. 1.25 환경부령 제 36호 개정 1998.12.31 환경부령 제 54호 전문개정 2004. 5.28 환경부령 제156호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실내공간오염물질)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(이하 “실내공간오염물질”이라 한다)은 별표 1과 같다.</p>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4. “환기설비”라 함은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어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.</p> <p>5. “공기정화설비”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,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대상)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.</p> <p>1. 지하역사(출입통로·대합실·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)</p>	<p>제2조(적용대상) ①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1. 모든 지하역사</p>	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2. 지하도상가(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)</p> <p>3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</p> <p>4.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</p> <p>5.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</p> <p>6.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</p> <p>7.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</p> <p>8.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</p> <p>9. 실내주차장</p> <p>10. 철도역사의 대합실</p>	<p>2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(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)</p> <p>3.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</p> <p>4.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</p> <p>5.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</p> <p>6.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</p> <p>7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</p> <p>8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(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)</p> <p>9.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</p>	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11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</p>	<p>②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.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3.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·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4.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(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) 5.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업소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영업시설 	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아파트 2. 연립주택 <p>제4조(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)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) ①다중이용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6.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영업시설</p> <p>③법 제3조제2항에서 “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”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.</p>	<p>제3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)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·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·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실내공기질 권고기준)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.</p>		<p>제4조(실내공기질 권고기준)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.</p>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제7조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등)</p> <p>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</p> <p>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업무의 위탁)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.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·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)</p> <p>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규교육 :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.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8시간으로 한다.</p> <p>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제8조(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)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·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고, 입주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		<p>④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,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환기설비의 설치기준)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.</p> <p>제7조(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)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,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·방법, 측정결과외 제출·공고시기·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p>		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포름알데히드 2. 벤젠 3. 톨루엔 4. 에틸벤젠 5. 자일렌 6. 1,4-디클로로벤젠 7. 스티렌 <p>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하고,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.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제10조(개선명령) 시·도지사는 다중이용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(이하 “개선명령”이라 한다)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2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		<p>제8조(개선명령기간 등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(이하 “개선명령”이라 한다)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·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개선명령 사유 2. 개선계획서의 제출 3. 개선기간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</p>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		<p>전에 시·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받은 시·도지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개선계획서의 제출 등)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개선명령을 받은 사유 및 그 대책 2.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3. 개선완료예정일 <p>②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.</p>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제11조(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)</p> <p>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(이하 “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”라 한다)를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다중이용시설을 설치(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)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	<p>③ 시·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)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은 별표 5와 같다.</p> <p>②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건축자재명 2. 시험·검사기관 3. 시험·검사방법 4. 측정기간 5. 오염물질 방출량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제12조(실내공기질의 측정)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,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p>		<p>제11조(실내공기질의 측정) ①법 제12조 제1항에서 “환경부령이 정하는 자”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·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한다.</p> <p>③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,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④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p>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제13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 다만,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	<p>제12조(보고)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.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.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</p> <p>제13조(오염도검사기관) 법 제13조제2항에서 “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립환경연구원 2.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.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벌칙)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·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제15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</p>		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제16조(과태료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<p>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·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·공고한 자 	<p>제4조(과태료의 부과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과태료금액·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·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4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</p>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3.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</p> <p>4.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</p> <p>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부과권자”라 한다)이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/p>	<p>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 <p>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p>	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</p> <p>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</p>		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(기존지하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지하시설을 설치·관리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기존시설의 중앙공조설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지하시설을 설치·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중앙공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중앙공조설비를 신설하거나 동시설의 전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이를 갖추 수 있다.</p> <p>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4호중 “지하상가”를 “지하상가(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시설을 제외한다)”로 한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[98.12.31 대통령령 제16,056호]</p> <p>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[98.12.31 환경부령 제54호]</p> <p>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</p>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[전문개정 2003. 5.29 법률 제6911호]</p> <p>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(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)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[전문개정 2004. 5.25 대통령령 제18,402호]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4호중 “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”을 “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”으로 한다. ②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항제7호중 “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”을 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”으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[전문개정 2004. 5.28 환경부령 제156호]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에 관한 제10조 및 별표 5의 규정은 2006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>제3조(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대한 적용례)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“2005년 1월 1일”을 “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”로 본다.</p>

법	시 행 령	시 행 규 칙
<p>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</p> <p>④(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⑤(다른 법률의 개정)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6조제19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며.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</p> <p>⑥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가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/p>		<p>제4조(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적용례)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 하여야 한다.</p> <p>②이 규칙 시행후 새로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간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.</p> <p>제5조(보고에 대한 특례)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2003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환경부와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7조제3항제7호중 “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”을 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”으로 한다.</p>

시행규칙별표

[별표 1]

실내공간 오염물질(제2조관련)

1. 미세먼지(PM10)
2. 이산화탄소(CO₂)
3. 포름알데히드(HCHO)
4. 총부유세균
5. 일산화탄소(CO)
6. 이산화질소(NO₂)
7. 라돈(Rn)
8. 휘발성유기화합물(VOC)
9. 석면
10. 오존

[별표2]

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관련)
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	PM10 ($\mu\text{g}/\text{m}^3$)	CO ₂ (ppm)	HCHO ($\mu\text{g}/\text{m}^3$)	총부유세균 (CFU/ m^3)	CO (ppm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·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(연면적 2000 m^2 이상),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(연면적 1500 m^2 이상), 항만시설중 대합실(연면적 5000 m^2 이상)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(연면적 3000 m^2 이상), 장례식장 및 찜질방(연면적 1000 m^2 이상), 대규모점포	150 이하	1,000 이하	120 이하		10 이하
의료기관(연면적 2000 m^2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), 국공립 보육시설(연면적 1000 m^2 이상),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·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(연면적 1000 m^2 이상), 산후조리원(연면적 500 m^2 이상)	100 이하				
실내주차장(연면적 2000 m^2 이상)	200 이하				

[별표3]

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4조관련)
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	NO ₂ (ppm)	Rn (pCi/l)	VOC ($\mu\text{g}/\text{m}^3$)	석면 (개/cc)	오존 (ppm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·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(연면적 2000m ² 이상),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(연면적 1500m ² 이상), 항만시설중 대합실(연면적 5000m ² 이상)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(연면적 3000m ² 이상), 장례식장 및 찜질방(연면적 1000m ² 이상), 대규모점포	0.05 이하	4.0 이하	500 이하	0.01 이하	0.06 이하
의료기관(연면적 2000m ²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), 국공립 보육시설(연면적 1000m ² 이상),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·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(연면적 1000m ² 이상), 산후조리원(연면적 500m ² 이상)			400 이하		
실내주차장(연면적 2000m ² 이상)	0.30 이하		1,000 이하		0.08 이하

비고 : 휘발성유기화합물(VOC)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을 말하며,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자세한 정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다.

[별표 4]

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(제6조관련)

1. 환기설비는 평상시와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실내공기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

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되, 고장·정비시에도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2.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용량기준은 환기횟수 및 이용인원당 환기량으로 계산하며, 아래 표의 시설별 계산값 중 높은 값을 당해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용량으로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항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다중이용 시설 산정기준	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(연면적 2000㎡ 이상),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(연면적1500㎡ 이상), 항만시설중 대합실(연면적 5000㎡ 이상)	지하역사, 지하도상가(연면적 2000㎡ 이상)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(연면적 3000㎡ 이상), 장례식장 및 찜질방(연면적 1000㎡ 이상), 대규모점포	의료기관(연면적 2000㎡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), 국공립 보육시설(연면적 1000㎡ 이상),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·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(연면적 1000㎡ 이상), 산후조리원(연면적 500㎡ 이상)	실내주차장(연면적 2000㎡ 이상)
환기횟수(회/h)	0.3 이상	0.5 이상	0.7 이상	3 이상
이용인원당 환기량(㎡/인·h)	25 이상	25 이상	25 이상	25 이상

비고: 1. 실내주차장에는 사람이 아닌 차량이 주요염원이므로 이용인원당 환기량 기준을 단위면적당 환기량(㎡/㎡·h)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.

2. 환기횟수는 건물의 실내공기 체적에 대한 시간당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량의 비율을 말한다.

3. 이용인원당 환기량은 1인이 1시간에 필요로 하는 건물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량을 말한다.

3.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는 빗물 또는 쓰레기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4. 다중이용시설 안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기류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.
5. 외부배출구로부터 배출되는 공기 및 소음으로 인하여 보행자나 인근 건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6.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에 설치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7.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.
8.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[별표 5]

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(제10조제1항관련)

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되,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(단위 : mg/m³·h)

오염물질 \ 구분	접착제	일반자재
포름알데히드	4 이상	1.25 이상
휘발성유기화합물	10 이상	4 이상

비고: 1. 일반자재란 벽지, 도장재, 바닥재,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.

2.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말하며,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자세한 정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방법에서 정한다.

시행규칙서식

[별지 제1호서식]

시 공 사 명

우 〇〇-〇〇 / 담당부서명	주 소 담당부서장 〇〇〇	/ 전화() 〇〇〇-〇〇〇〇 / 전송 〇〇〇-〇〇〇〇	담당자 〇〇〇 (전자메일)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문서번호 : _____ 년 월 일

수 신 : 시장·군수·구청장

제 목 : (공동주택명) 공기질 측정결과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의 규정에 의한 (공동주택명)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규모	총 00세대 : 〇〇세대(〇〇평형), 〇〇세대(〇〇평형), 〇〇세대(〇〇평형)													
측정업체	업체명 (주소 : _____, 전화 : _____)													
측정개소	1	2	3	4	5	6	7	8	9	...	평균			
측정일														
측정시간														
층														
평형														
거실방향														
온도(℃)														
습도(%)														
포름알데히드														
톨루엔														
벤젠														
에틸벤젠														
자일렌														
1,4-디클로로벤젠														
스티렌														

- 비고: 1. 거실방향은 8방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.(예 :남동향, 남남향)
 2. 오염물질의 단위는 $\mu\text{g}/\text{m}^3$ 으로 한다.

210mm × 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기 관 명

우 〇〇-〇〇 / 담당부서명	주 소 담당부서장 〇〇	/ 전화() 〇〇〇-〇〇〇〇 담당자 〇〇(전자메일)	/ 전송 〇〇〇-〇〇〇〇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문서번호 :

년 월 일

수 신 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

제 목 :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

1. 일반현황(다중이용시설별로 별도 기재)

주 소		전 화	
연 면 적 (의료기관은 병상수도 기재)	m ²	거 주 자 수 (상근자 포함)	명
준 공 일		일일이용객수	명/일
설치(소유)자			

2. 환기설비 현황(다중이용시설별로 별도 기재)

내 용	세 부 내 역						
환기설비 설치내역	구 분	위 치	규 격	송풍기용량 (Hp)	급기량 (m ³ /h)	배기량 (m ³ /h)	가 동 시 간
	개 별 식						
	중앙관리식						

210mm × 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3. 실내공기질 측정결과

측정대행여부(외부)	측정기관 : 상호명 기재 연 락 처 :
측정기간	월 일 ~ 월 일
측정결과 조치사항	* 있는 경우만 기재

(1-1)

일련 번호	시설명	측정 지점번호	측정 위치	측정 시각	측정 항목				
					PM10 ($\mu\text{g}/\text{m}^3$)	CO ₂ (ppm)	HCHO ($\mu\text{g}/\text{m}^3$)	총부유세균 (CFU/m ³)	CO (ppm)
총평균									
1		1 2							
	평균								
2		1 2							
	평균								
3		1 2							
	평균								
·		· ·							
	평균								

일련 번호	시설명	측정 지점번호	측정 위치	측정 기간	측정 항목				
					NO ₂ (ppm)	Rn (pCi/l)	VOC (μg/m ³)	석면 (개/cc)	오존 (ppm)
총평균									
1		1							
	평균								
2		1							
	평균								
3		1							
	평균								
·		·							
	평균								

- 비고: 1. 해당 다중이용시설이 하나인 경우는 해당 내용만 기재하고 많은 경우는 이 서식에 준하여 작성할 것
2. 지하역사 등 해당 다중이용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측정값의 총평균과 개별 시설별 평균을 별도 명기할 것
3. 측정지점번호란에는 1개 대상시설에서 측정한 측정지점 모두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재할 것
4. 측정위치는 확인이 가능한 정확한 위치를 명시(예; 지하1층 대합실 승강장 앞)하되, 오염물질별 측정위치는 동일하여야 함
5. 다중이용시설별로 해당 측정항목에만 표시할 것
6. 측정값은 해당오염물질 기준치 자리수의 첫째자리 이하까지 명기할 것
7. 측정일이 측정항목별로 크게 다른 경우에는 측정값 밑에 해당 날짜를 명기할 것

210mm × 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